

감 사 원

심 사 결 정

분 류 번 호 2017-심사-294

제 목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산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
대표이사 A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ㄱ 발코니 외부창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원수급인이며 B(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청구인의 2차 하수급인인 ■■■ 소속 근로자이다.

나. 재해자는 2016. 12. 28. 14:00경 이 사건 공사 관련 청구인의 2차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공장 내 창고에서 창호에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유리를 적재해 놓은 고정장치가 넘어져 엄지발가락에 충격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7. 1. 18. 상병명 “좌족무지 근위지골 골절”을 진단받아 처분청에 요양급여(구분: 최초요양)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7. 0. 0.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요양급여를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보험가입자를 청구인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의 안전관리지역 외 현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시공계약이 아닌 자재구매계약인 경우이므로 원수급인은 책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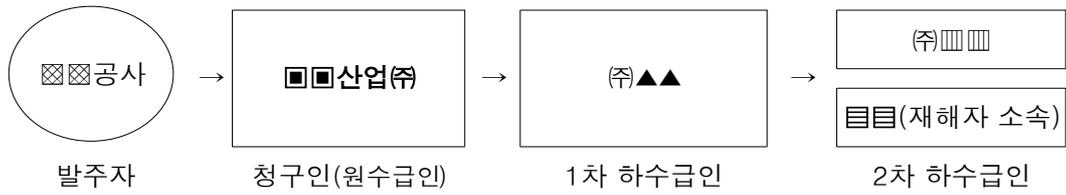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가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재해자 소속 사업장인 ㉸㉸에 이르는 도급 계약 관계와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 [그림] 및 [표 1]과 같다.

[그림] 도급계약 관계



[표 1] 사업장별 주요 사항

사업장명	사업장 및 공사 내용	비고
☒☒산업(주) (원수급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명: ㄱ 발코니 외부창호 설치공사 공사기간: '16. 10. 31. ~ '17. 3. 9. 	
(주)▲▲ (1차 하수급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과 최초 계약 (시공계약 및 물품구매계약) - 계약일: '16. 11. 15. - 공사명: ㄱ 발코니 외부창호 설치공사 - 공사기간: '16. 11. 15. ~ '17. 3. 9. 청구인과 재계약 (유리납품계약) - 계약일: '16. 12. 17. - 납품명: “ㄱ 발코니 외부창호 교체공사 중 2단지 22mm 복층유리” - 납품내역: 유리 제작·납품 및 환기구 설치 - 공사기간: '16. 12. 7. ~ '17. 1. 30. 	'16. 12. 16.자 합의로 최초 계약 취소 후 재계약 체결
(주)▣▣▣ (2차 하수급인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과 “유리 제작·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 - (주)▲▲의 요청에 따라 ㉠시 소재의 (주)▣▣▣ 공장 내 창고를 작업 공간으로 제공 	계약서 없음
▣▣ (2차 하수급인②) (재해자 소속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과 공사용역(노무)약정서를 작성 - 약정일: 2016. 12. 6. - 공사기간: 2016. 12. 7. ~ 2017. 2. 25. - 공사명: “문짝 유리취부 작업 1식(실링 포함)” - 공사내역: 문짝 유리끼우고 닦기 및 환기구 설치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2016. 11. 15.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최초 계약”이라 한다)하였으나 2016. 12. 16. 최초 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2016. 12. 17. 최초 계약의 일부인 “유리 제작 납품 및 환기구 설치”를 납품내역으로 하는 유리 납품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은 다시 ㉹㉹에 “유리제작 및 납품”에 대하여, 재해자 소속 사업장인 ㉹㉹에는 납품된 유리 자재를 플라스틱 창호에 끼우는 작업(이하 “조립 및 취부(sealing) 작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도급을 주었다.

(2) ▲▲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7. 2. 20.자 확인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일반적으로 창호 교체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공사 현장으로 납품된 유리와 창호를 취합하여 현장에서 조립하고 설치하지만, 이 사건 공사 현장이 협소하고 겨울인 점을 감안하여 ▲▲이 유리 제작업체인 ㉹㉹에 요청하여 ㉹㉹의 ㉹㉹공장 야적장을 무상으로 빌려 작업장소로 사용하였다.

(나) ▲▲으로부터 유리 조립 및 취부 작업을 도급받은 ㉹㉹은 ㉹㉹의 ㉹㉹공장 현장에서 해당 작업을 하였다¹⁾.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

1) 취부작업이 완료된 창호는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보내져 창호 납품업체가 설치·시공함

업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총공사”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와 그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라고 되어 있으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상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 및 창호 공사업”(분류코드: 42420²⁾)으로 분류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아닌 청구인의 안전관리지역 밖인 ㉠㉠의 ㉡공장에서 발생한 점과 청구인과 ▲▲ 간의 계약이 자재구매계약임을 들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주장하나, 인정사실“(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차 하수급인인 ▲▲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합의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최초 계약 내용 중 일부인 “유리 제작 납품 및 환기구 설치”를 납품내역으로 하는 “유리납품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계약의 형태가 시공계약이 아닌 자재구매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리납

2) 분류코드 앞 두자리가 “41~42”인 경우 건설업에 해당

품을 위해서는 유리를 창호에 끼우는 작업이 포함되는 것이고, 창호에 유리를 끼우는 작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가입자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최종 목적물인 발코니 설치를 위하여 수행한 작업이라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총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재해자가 수행한 유리끼우기 작업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행하여지는 작업으로서 총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 01 . 03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마. (생략)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이하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이하 생략)

○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④ (생략)